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6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춘선,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오금란, 유정희,
이민옥,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 환경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규정(안 제2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4.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 · 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생 략) 3. “ <u>생태계교란 생물</u> ”이란 「 <u>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② (현행과 같음) 3. “ <u>생태계교란 생물</u> ”이란 「 <u>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신 설〉	4. “ <u>유입주의 생물</u> ”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 <u>외래생물</u> ”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신 설〉	6. “ <u>생태계위해우려 생물</u> ”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② (생 략)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 계획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3.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4. (생략)

④ (생략)

〈신설〉

-----.

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삭제〉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 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제6조 ~ 제14조 (생략)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7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용어 정비와 관련 부서(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실태조사¹⁾,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방제, 홍보)의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참고자료로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을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보고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6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간(최근 '25. 7. 16.)

(붙임)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66
결재일자	2025. 1. 24.
공개여부	부로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 투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진영	구동근	01/24 박미성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

2025. 1.

정 원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12호, '24.10.31.)

□ 추진방향

- 기관별 관리 대상지 선정·제거 작업 및 사후관리 시행
- 민관협력을 통한 제거 사업 확대 등 시민참여형 파트너십 구축

II 2024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

- 생태계교란식물 집중 제거의 달 운영(4~6월)
 - 기관별 월 1회 이상 실시(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 자치구)

III 2025년 추진계획

- 대상지역 : 한강, 주요지천 및 공원 등
- 관리대상 : 생태계교란식물(18종)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서양등골나물, 미국쑥부쟁이 등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서양등골나물>

□ 관리방법

- 「서울시 외래식물 분포특성 및 관리방안Ⅲ」에 따라 체계적 관리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 비율이 높은 주요 하천, 공원, 산림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제거 작업 시행

□ 추진방법

- 집중관리지역 중점 제거 관리로 효율 증대

- *****

- 공원, 하천변 등을 중심으로 물리적(인력 등) 방법을 통해 집중 제거

- 생태계 교란식물별 맞춤형 적정 제거

-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가시박은 일정 면적을 선정하여 집중 반복 제거
- 생태계교란 식물 봄철에 뿌리째 뽑기 등 어린 개체 집중제거

- 제거 지역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데이터 관리)

- 제거 지역의 위치도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시민참여 관리 기반 조성

-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기업체·자원봉사자 참여
- 기업·시민단체와의 MOU 체결(3년 이상 지속적인 참여 독려) 등

- 「생태계교란식물 집중 제거의 달」 운영

- 기 간 : *****

- 운영방법 : 월 1회 이상 시민참여 제거, 리플릿 제작 등 홍보물 제작·배포
(생태계교란 식물의 식별방법 및 위해성 홍보, 시민참여 유도)

- 참여대상 : 학생, 기업체, 자원봉사자 등

- 제거지역 : 공원 및 하천 등(관리기관별 선정)
- 활동내용 : 식물 뿌리째 뽑기 등 어린 개체 집중제거, 현수막 게첨, 이용시민에게 리플릿 배부 등

예산 집행계획

교부기준 :

예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추진 일정

- 2025. 2. : 관리기관별 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5. 2. ~ 3. : 보조금 교부
- 2025. 3. ~ 12.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V 행정사항

사업 추진 관련 준수 사항

- 관리기관별 자체 세부 관리 계획 수립 제출 및 제거 대상지 선정
 - (붙임3)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방법 지역별 분포 현황을 참조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관리 연중 시행
- 어린 개체 집중 제거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두어질 수 있도록 3월 중
사업 조기 시행

붙임 1.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계획(서식) 1부.

2.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실적(서식) 1부.

3.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방법 1부.

4.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관리 협약서(안) 1부. 끝.